

【부 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71호(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4

【고 시】

- 법무부고시제2016-317호(귀화허가) 9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94호(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부분준공(시설물별)) 17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99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20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0호(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삼송 A-11-1BL>) 21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1호(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정관 A-4BL>) 22
-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40호(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26
-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6-7호(시험림 지정해제) 27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4호(국적상실) 27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2호(국적상실) 28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2호(도로구역 결정<변경>) 2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3호(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29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7호(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3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1호(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3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2호(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34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6호(하천점용 허가) 45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1호(하천점용 허가) 45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8호(하천점용 허가) 46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9호(하천공사 시행계획) 46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7호(하천점용 변경허가) 48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8호(충주 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49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69호(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0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2호(항로표지 현황변경) 51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3호(항로표지 신설) 51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7호(항로표지 신설) 52

(이면 계속)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0호(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5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8호(항로표지 폐지, 신설, 현황변경)	5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9호(항로표지 현황변경<위치이동 및 폐지>)	5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7호(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5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8호(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5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9호(실시계획 인가).....	5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0호(실시계획 인가).....	5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87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5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88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5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90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5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92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58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525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9
○인사혁신처공고제2016-530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1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20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62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84호(방송법 시행규칙 등 4개 미래창조과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외교부공고제2016-97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6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56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57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61호(사업재편계획 승인).....	67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31호(중앙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기금관리·운용규정 폐지<안> 입안예고)	68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41호(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8
○환경부공고제2016-764호(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69
○환경부공고제2016-765호(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70
○환경부공고제2016-767호(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71
○환경부공고제2016-768호(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71
○환경부공고제2016-770호(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7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95호(부동산투자회사 등록)	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4호(부동산투자회사 등록)	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5호(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6호(신기술 지정 신청)	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7호(신기술 지정 신청)	75
○문화재청공고제2016-298호(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76
○산림청공고제2016-20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9
○산림청공고제2016-203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0
○산림청공고제2016-204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터널 및 지하공간 건설공사시 주요 지보재로 사용되는 숏크리트의 고성능화를 위해 급결제 외에도 분체혼화제를 추가 사용하는 기존의 고강도 숏크리트 공법과 달리 급결제만 사용하여 고강도, 고내구성의 고성능 숏크리트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숏크리트에 적용시는 숏크리트의 단위시멘트량을 감소시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일반 숏크리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배합 변경만으로 고성능 숏크리트와 일반 숏크리트를 병행하여 시공할 수 있어 현장적용성이 편리한 기술이다.

<범위>

C12A7계 광물을 이용한 고성능 시멘트 광물계 급결제와 이를 이용한 숏크리트 시공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플러스산업
- 나. 전화번호 : ① 031-903-9595

2. 명칭 : 그라우팅 유공관(S-PE)을 이용한 터널 콘크리트라이닝 천단부 배면 공동의 밀실한 채움을 위한 시공장치와 시공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터널라이닝 천단부 배면공동을 보다 밀실하게 채우기 위한 시공장치와 시공공법으로서, 터널 굴착 후 숏크리트면에 방수막 설치가 완료되면 터널 천단부의 정점부위를 따라 종방향으로 방수막에 주입용 그라우팅 유공관(S-PE, 50A)과 배기용 그라우팅 무공관(S-PE, 25A)을 융착 설치하여 약 50m/span 단위로 소화전 박스(철도 및 지하철은 일정 간격마다 일정한 크기의 박스를 제작, 콘크

리트라이닝 타설시 소화전 박스 대응으로 설치) 아래로 내려 블록아웃시켜 놓았다가 라이닝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난후 일정한 양생기간 경과 후에 주입관을 통해 그라우팅 주입재를 적정 압력(주입관 내부압력 6~7 kgf/cm², 최대 10kgf/cm²)으로 주입시킴으로 라이닝 천단부 배면공동을 보다 밀실하게 채우는 신공법이다.

<범위>

라이닝콘크리트 타설 전에 터널 천단부의 방수막에 주입용 유공관(S-PE)과 배기용 무공관(S-PE)을 융착 설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계된 소화전 박스에 블록아웃 시켜, 콘크리트라이닝 시공 후 배면공동에 대해 주입용 볼밸브와 배기용 볼밸브를 활용하여 안전한 지상작업을 통해 효과적인 주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터널라이닝 천단부 배면의 공동을 보다 밀실하게 채우는 시공장치와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16-29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아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중요민속문화재제 285호 예천 희이재사)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105

나. 사 유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실시함

※ 영향이 있는 경우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